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1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김용민·김성회·윤종군

노종면 • 송재봉 • 백승아

박성준 • 조계원 • 안태준

강유정 • 모경종 • 이성윤

서미화 • 부승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
|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 |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 | |
| 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 | |
|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
| <단서 신설> |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
| | 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 |
| | 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 |
| | 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
| |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
| | 임명할 수 있다.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